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65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20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지세13410-11394)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01.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지세 13410-11394,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01. 9. 27.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지방세 부과·징수 문서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그 송달자료가 폐기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을 뿐이며,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 일련의 과정에서 체납세액이나 압류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상황에 비추어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0.경부터 1997. 9.경까지 아래 표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차례에 걸쳐서 '본세'란에 기재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건축물), 주민세 및 취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연번 16번의 1999년 4월 주민세 550,9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9. 4. 12.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인 '광주 북구 I아파트 105동 302호'로 발송되었다.

3) 피고는 2000. 9. 22. 원고가 지방세 합계 90,544,5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3. 7. 원고에게 체납처분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1. 3. 9. 이를 수령하였다. 2001. 4. 26.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및 2001. 6. 29. 공매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1. 7.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의 확정된 체납세액을 아래 표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98,595,330원으로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01. 7. 24. 매각대금 배분에 따라 73,994,180원을 받아 그 중 34,049,9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단위:원)

세 목	연번	과세년월	과세대상	본세	가산금	체납합계	배분충당액
종합토지세	1	1995. 10.	광주 북구 B	964,100	700,980	1,665,080	700,980
	2	1996. 10.	광주 북구 B	647,930	439,500	1,087,430	439,500
	3	1997. 4.	세무조사 추징분	645,620	370,760	1,016,380	370,760
	4	1997. 10.	광주 북구 B	1,097,890	614,560	1,712,450	614,560
	5	1998. 10.	광주 북구 C 외	373,450	112,730	486,180	112,730
	6	1999. 10.	광주 북구 C 외	594,260	149,500	743,760	149,500
	7	2000. 10.	광주 북구 C 외	461,600	61,620	523,220	61,620
재산세(건축물)	8	1997. 6.	광주 북구 C	16,240	790	17,030	790
	9	1998. 6.	광주 북구 C	17,840	870	18,710	870
	10	1999. 6.	광주 북구 C	15,840	780	16,620	780
	11	2000. 6.	광주 북구 C	15,980	780	16,760	780
주민세	12	1997. 1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38,472,340	22,236,650	60,708,990	59,821,880
	13	1998. 4.	양도소득세할주민세	80,280	4,010	84,290	4,010
	14	1998. 1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3,867,270	1,678,160	5,545,430	1,678,160
	15	1998. 1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12,959,260	5,624,280	18,583,540	5,624,280
	16	1999. 4.	양도소득세할주민세	550,920	199,400	750,320	199,400
	17	1999. 4.	95년귀속종합소득세할주민세	1,399,940	506,530	1,906,470	506,530
	18	2000. 8.	개인균등할주민세	5,620	270	5,890	270
취득세	19	1996. 12.	광주 북구 D	81,170	4,050	85,220	85,220
	20	1997. 9.	광주 북구 E	2,277,820	1,343,740	3,621,560	3,621,560
소계				64,545,370	34,049,960	98,595,330	73,994,180
재산세(건축물)	추가	2001. 6	광주 북구 C	15,580	760	16,340	
주민세	추가	2001. 8	개인균등할주민세	5,620	270	5,890	
소계				21,200		22,230	

원은 가산금으로 우선징수한 후, 나머지 39,944,220원은 본세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공매 이후 원고의 잔여 체납액은 24,601,150원이 되었다.

5) 피고는 그 이후에도 위 표 추가 표기와 같이 2001. 6.과 2001. 8. 원고에게 재산세(건축물) 15,580원과 주민세 5,62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과 함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를 모두 체납하여 추가 체납액이 합계 22,230원이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6) 피고는 2001. 9. 25. 원고의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그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그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1999. 4.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위 표 연번 제16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 4. 12. 등기우편으로 이 부분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인 "광주 북구 I아파트 105동 302호"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송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서류는 그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됨으로써 폐기되어 납세고지서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전산자료로 세목, 세액, 부과일자 및 납기일자가 기재된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1990. 3.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가 '광주 북구 I아파트 105동 302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99. 11. 15. 작성한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에도 동일한 주소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 2. 7.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역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99. 4.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위 주소로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1. 3. 9. 이 사건 체납지방세를 대상으로 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고의 위 주소로 발송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 때나 그 후의 공매절차나 배당절차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송달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후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④ 원고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구 지방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공시송달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역시 구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송달서류 역시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 역시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공공기관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징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문서의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수가 완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보존기간 만료 이전에 송달서류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의 부과처분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과세처분과 그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 기록물의 처리는 완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서류는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전에 관한 규칙(1999. 12. 30. 행정자치부령 제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책 부록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10년일 뿐 아니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따라 5년으로서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보존기간 10년의 대상기록물 두 번째 항(5년 이상 행정상의 시효가 지속되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그 보존기간 역시 10년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송달서류는 이미 그 보존기간 10년이 도과되었고, 설령 피고가 보존기간 착오로 송달서류를 폐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평호

판사 이양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광산구 F 제101동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광산구 G 대 26,68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9층 제1901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5.5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6,685.6분의 35.671

2. 광주 북구 C 대 264㎡

3. 광주 남구 H 대 25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52조 (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9. 12. 30. 행정자치부령 제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문서의 보존기간책정기준)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10년
   가. 일반정책에 관한 계획·조사·연구 및 보고문서
   나. 기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제5조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보존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책과 같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유사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사한 기능을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영 제3조 제3호의 처리과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부록]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세분류 및 단위 업무별 보존기간
▣ 13400 지방세 13410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 · 부과·징수 관계 [10] · 체납액 정리(독촉·압류 등) [10] · 가산금 관계 [10]

■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 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25호로 전부 개정(제명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 법에 의한 기록물로 본다.

■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로 제정되어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로 전부 개정(제명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관련 기록물 중 관할전문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기록물에 한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분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단서 생략)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보존기간	대 상 기 록 물
10 년	1. 20년 이상 보존대상기록물 외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관계법령에 의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기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